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20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회 영

나. 제안이유

-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 및 지원대상을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여 평균연령 80세에 접어든 참전유공자의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 변경(안 제3조)
 - 지원 제외대상 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
-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변경(안 제4조)
 -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→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

라. 참고사항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,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법 개정으로 『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을 『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로 변경하고
- 참전명예수당을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확대 지급하기 위해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고
- 제4조 제1호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을 월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6.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와 무훈수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고엽제와 상이군경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, 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
-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, 수당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, 타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